

2014년도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 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 기준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함.

※ 단,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은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가구	784천원	23,960 (25,529)	4,496 (4,790)	24,620 (26,233)
2인 가구	1,336천원	40,244 (42,880)	20,861 (22,227)	40,705 (43,371)
3인 가구	1,728천원	52,041 (55,450)	37,208 (39,645)	52,563 (56,006)
4인 가구	2,120천원	64,087 (68,285)	57,308 (61,062)	64,818 (69,064)
5인 가구	2,512천원	75,950 (80,925)	77,176 (82,231)	76,909 (81,947)
6인 가구	2,904천원	87,604 (93,342)	93,160 (99,262)	88,738 (94,550)
7인 가구	3,297천원	99,037 (105,525)	109,994 (117,199)	100,197 (106,7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 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 지원 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